

교직원복리후생규정

제정 2012. 7. 1

개정 2024. 9. 3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강문화산업대학교(이하 '대학'이라 함) 교직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교직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으로써 관계법규 등에 의해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제도 외에 대학이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복리후생 제도에 적용한다.

제3조(업무담당부서) 복리후생 관리 업무는 교육지원처에서 담당한다.

제4조(우수사원 및 장기근속자 포상) 교직원 중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대학발전에 공헌한 자와 장기근속 교직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건강 및 체력 증진 활동 지원) ① 대학은 교직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대학은 교직원의 체력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시간과 여건을 제공할 수 있다.

제6조(원거리 거주자 지원) 대학은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원거리 거주자를 위한 기숙사 등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제7조(근무복 지급) ① 현장 근무자는 동절기 또는 하절기 근무복을 지급할 수 있다. 단, 현장근무자의 필요에 의해 근무복 이외에 현장업무에 필요한 물품구입으로 대체 할 수 있다.

② 현장 근무자의 대상 범위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특정일 기념 물품의 제공) 대학은 명절, 개교기념일, 본인 결혼일, 기타 특정일에 교직원에게 기념물품을 제공할 수 있다.

제8조의 2(사망조위금의 지급) 대학은 교직원 본인이 사망시에 유족에게 조위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상조회 구성) ① 교직원은 상호간의 친목 도모와 화목한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상조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상조회는 자체 회칙을 정하여 운영한다.

제10조(기타) ① 교직원에게 복지포인트를 지급하여 건강검진, 문화 활동, 도서 및 음반 구입 등에 사 용하게 할 수 있으며, 이를 운영하기 위한 예산의 확보, 지급 대상 및 기타 세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② 교직원에게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를 운영하고 이를 위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이 규정에 의해 실시되는 복리후생 제도는 대학의 사정에 의해 교직원에게 사전 통보 없이 변경 또는 폐지될 수 있다.

부 칙

- ① 이 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이 규정은 2024년 9월 1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